

## 신입생 모집중지 및 통폐합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‘사립대학경영지원컨설팅’ 및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제31조 제2항과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루터대학교의 신입생 모집 중지 및 전공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20.2.25.개정)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2조에 규정된 전공에 적용한다. (2020.2.25.개정)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① 이 규정에서“신입생”은 학칙 제2조 및 제2조1에 따른 전공의 정원 내·외 입학생을 말한다. (2020.2.25.개정)

② 이 규정에서 “교원”이란 강의전담교수 및 겸임교원, 강사, 외국인교원을 제외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의미한다.

③ 이 규정에서 “모집중지”라 함은 본교 학칙 제2조에 규정된 전공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 (2020.2.25.개정)

④ 이 규정에서 “통폐합”이라 함은 본교 학칙 제2조에 규정된 전공의 통합 또는 폐지함을 말한다. (2020.2.25.개정)

**제4조(신입생 모집중지 및 전공 인원 조정 기준)** 신입생 모집중지 및 전공 인원 조정 기준은 다음 각 호 1에 의해 정한다. (2020.2.25.개정)

1.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관할청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‘사립대학경영지원컨설팅’에서 결정한 경우
2. 최근 2년 연속 4월 1일 기준으로 재학생 충원률이 80% 미만인 경우
3. 최근 2년 연속 신입생 충원률이 90% 미만인 경우

**제5조(통폐합 기준)** 전공의 통합 및 폐과 기준은 다음 각 호 1에 의해 정한다. (2020.2.25.개정)

1. 신입생 모집중지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어 학과 편제정원이 없는 경우
2. 전공별 등록인원이 전체 편제정원의 50% 미만인 경우 (2020.2.25.개정)
3.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인문대학 평가를 원용한다)

**제6조(시기 및 절차)** ① 이 규정에 의한 신입생 모집중지 및 통폐합 시기는 매 학년도 신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 결정한다.

② 신입생 모집중지 및 통폐합 심의 대상 학과는 아래와 같이 심의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.

1. 전공의 소명 이유 및 개선안 요약본 (2020.2.25.개정)
2. 전공의 정원 및 취업 등과 관련된 국가 및 관할청의 정책 (2020.2.25.개정)
3. 전공 경쟁력 상황 분석자료 - 타 대학교 및 타 전공 (2020.2.25.개정)

4. 주요 지표 현황

5. 전공 운영의 주요 문제점 및 취약점(전공운영 현황의 부진 원인) (2020.2.25.개정)

6. 전공 운영 개선 방향(전공운영 전략방향 및 개선 실행 계획) (2020.2.25.개정)

7. 전공 개선 실천 계획으로 인한 대학 및 전공에 미치는 기대효과 (2020.2.25.개정)

③ 신입생 모집중지 및 통폐합에 따른 심의 절차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.

**제7조(학생)** 전공의 통폐합이 결정된 전공(계열)의 재적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,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 (2020.2.25.개정)

**제8조(교원)** 폐과가 결정된 전공의 교수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 (2020.2.25.개정)

① 폐과가 결정된 전공의 교원은 모집중지 된 당해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전공로의 소속전환 및 교양전담교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, 기간 내 변경하지 않은 경우 폐과 전공의 재학생이 0명이면 면직한다. (2020.2.25.개정)

1. 타 전공로의 소속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은 본 규정 제8조 1항의 2년 이내에 포함된다. (2020.2.25.개정)

2. 교양전담교원(교양 소속)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양과목 개설안을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과목이 개설된 경우 가능하며, 이 경우 해당 교원은 교양소속으로 변경된다.

② 폐과가 결정된 전공의 교원은 정교수(정년보장교원)로의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. (2020.2.25.개정)

③ 폐과가 결정된 전공의 교원으로 책임수업시수가 부족할 경우 각종 수당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 (2020.2.25.개정)

④ 폐과가 결정된 전공의 교원이 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(2020.2.25.개정)

**제9조(기타)** ① 제4조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루터대학교의 설립 기본이 된 신학전공은 위 규정에서 제외한다. (2020.2.25.개정)

② 한국사학진흥재단의‘사립대학경영지원컨설팅’에 의해 신입생 모집중지 및 폐과된 전공은 컨설팅 결과를 반복할 수 없다. (2020.2.25.개정)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 이외에 신입생 모집중지 및 전공 통폐합에 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(2020.2.25.개정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 한국사학진흥재단‘사립대학경영지원컨설팅’결과에 의한

#### 4-1-9 신입생 모집중지 및 통폐합에 관한 규정

신입 생 모집중지 및 폐과도 이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2012년 신입생 모집 중지 및 폐과된 영어학과와 공연예술학과의 연구년 및 학위취득 종료 일을 2015 학년도 1학기 말까지로 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